

外國의 法과 經濟理論

李 相 潤*

◇ 차 례 ◇

I. 序	IV. 法과 經濟의 諸方法論
1. 法과 經濟의 意義	1. 保守的 接近方法
2. 法과 經濟의 沿革	2. 進步的 接近方法
II. 效率性과 衡平性	3. 急進的 接近方法
1. 效率性的 概念	4. 古典的 自由主義接近方法
2. 衡平性的 概念	V. 各國의 法과 經濟動向
3. 效率性과 衡平性的 關係	1. 背 景
III. Coase Theorem	2. 各國의 法과 經濟
1. 背 景	VI. 結: 우리나라의 “法과 經濟”
2. Coase Theorem의 예	및 診斷 向後課題

I. 序

1. 法과 經濟(Law and Economics)의 意義

“法과 經濟”의 意味를 가장 간단히 規定한다면 法을 經濟的으로 分析하는 것 (Economic Analysis of Law)이라고 말할 수 있다. 法의 經濟的 分析이라 함은 크

* 法制處 事務官, 法學博士

게 다음의 두가지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첫째는 ‘效率性’(Efficiency)의 問題 즉 法이 法의 目的을 얼마나 效率的으로 達成할 수 있는가의 問題이다. 이는 同一한 法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 最小의 努力을 들이는 方案 및 同一한 努力으로서 法의 目的을 最大로 達成하는 方案을 分析하는 것이다.

둘째는 ‘衡平性’(Equity)의 問題 즉 法의 目的이 達成되었을 경우, 그 效果가 法의 수혜자에게 公平하게 分配될 수 있는가의 問題이다.

“法과 經濟”를 예를 들어 좀더 쉽게 說明하자면 첫째,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떡을 만들 수 있는가 및 둘째, 이 만들어진 떡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는가의 問題이며, 결국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찾는 方法으로 表現될 수 있을 것이다.

2. 法과 經濟의 沿革

“法과 經濟”의 시작은 美國에서 주로 經濟法 分野인 獨占禁止法의 經濟的인 分析에서 비롯되었다¹⁾. 獨占禁止法 分野에서의 수많은 法令과 判例는 經濟學者들에게 市場經濟下에서의 企業行態에 대한 많은 情報를 제공하였고 經濟學者들은 이러한 情報를 바탕으로 關聯 法令 및 政策을 經濟學的인 觀點에서 分析하였다. 그러나 최근 “法과 經濟”의 分析對象은 獨占禁止法에서 不法行爲論(Torts)·契約法(Contracts)·海商法(Admiralty)·物權法(Property) 등의 普通法(Common Law) 分野는 물론 憲法·刑法·刑事訴訟法·民事訴訟法·行政訴訟法·立法節次·法執行 및 司法行政 등 非經濟法 分野에 까지로 擴大되고 있다.

최초의 非經濟法 分野에 대한 現代的 “法과 經濟”(Law and Economics)理論은 1960년대 초반 Guido Calabresi의 不法行爲論 및 Ronald H.Coase의 社會的 費用에 대한 論文을 始發로 하고 있다²⁾. 이 두 論文은 非經濟 分野의 法을 經濟學을 使用하여 分析한 最初의 試圖이었다. Coase³⁾가 紹介한 코스定理(Coase Theorem)의

-
- 1)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2) Guido Calabresi, *Some Thoughts on Risk Distribution and the Law of Torts*, 70 *Yale L.J.* 499(1961); Ronald H.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 Law & Econ.* 1(1960).
 - 3) 18세기 및 19세기 초에 걸쳐 Beccaria 및 Bentham에 의하여 형법의 경제학적인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Cesare Beccaria, *On crimes and Punishments*(Henry Paolucci Trans. 1963 [1764]; Jeremy Bentham, *A Principles of Penal Law*, in *1 Works of Jeremy Bentham* 1, 365(John Bowring ed., 1843).

概念은 物權法 分野에 대한 經濟學的 分析을 試圖한 것으로서, 다양한 分野의 法律을 經濟學的으로 分析할 수 있는 理論的 土臺를 提示하였다. 최근에는 Becker에 의하여 經濟學·非經濟學的인 分野는 물론 인간의 사랑과 自意識 같은 心理的 分野를 經濟學的으로 分析하려는 方法까지도 試圖되고 있다⁴⁾.

II. 效率性(Efficiency)과 衡平性(Equity)

1. 效率性的 概念

가. 파레토最適(Pareto Optimality)上的 概念

이탈리아의 經濟學者 파레토(Pareto Optimality)⁵⁾의 概念에 의하면 效率性を 充足시킨다 함은 “다른 個人 또는 集團의 損失을 야기시키지 아니하고서는 한 個人 또는 集團의 利益을 增加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法規가 效率性を 提高시킨다 함은 “다른 個人 또는 集團에는 損害를 야기시키지 없이 한 個人 또는 集團의 利益을 增加시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것이다.

나. 總體的 概念

Kaldor-Hicks가 提示한 總體的 概念에 의한 效率性的의 意味는 “一定한 상태에서 한 個人 또는 集團의 全體의 利益이 增加되는 경우”를 意味한다⁶⁾. 즉, 法的 政策的 效果가 일부 個人 또는 集團에 損失을 야기시킬지라도 社會全體의 견지에서 볼 때 利益이 增加한다면 이 法은 效率性を 增加시키는 法이라 할 것이다.

다. 파레토最適의 概念과 總體的 概念의 關係

파레토最適의 概念은 總體的 概念의 特殊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파레토最適이 充足되어 어떠한 個人이나 集團의 損失을 야기시키지 없이 한 個人이나 集團의 利益을 增加시킬 수 있다면, 이는 社會全體적으로 利益을 增加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됨으로 파레토最適의 충족은 總體的 概念의 效率性を 당연히 충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總體的인 概念의 效率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社會全體적인 利益이 增加될지라도 一定한 個人이나 集團이 損害를 보는 경우가 包含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파레토最適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즉, 간단히 말해서 파레토最適에 의한 效

4) Gary S. Becker,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1976).

5) Vilfredo Pareto.

6) A. Mitchell Polinsky, An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率性充足은 總體的 概念의 效率性充足의 充分條件이나, 總體的 概念의 效率性充足은 파레토最適에 의한 效率性充足의 必要條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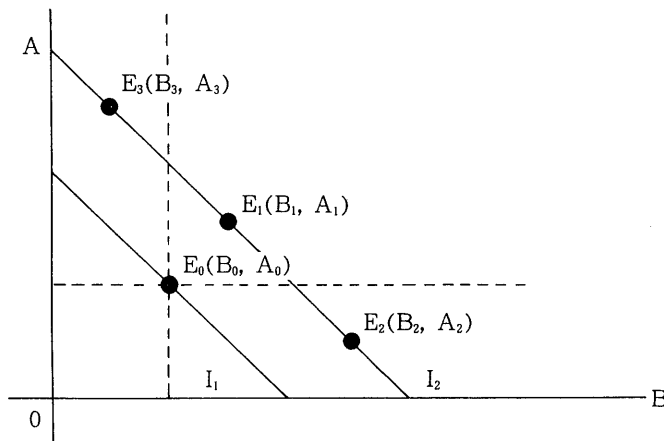
만일 總體的 概念의 效率性下에서 利益을 본 個人 또는 集團이 損害를 본 個人 또는 集團에로의 補償을 의무로 하는 法的·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總體的 概念에 의한 效率性 概念은 파레토最適에 의한 效率性 概念과 별 差異가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이 경우 總體的 概念에 의한 效率성을 “潛在的 파레토最適”(Potential Pareto Optimality)이라고도 부른다⁷⁾. 이하에서 效率性이라 지칭할 때에는 總體的 概念의 效率성을 意味한다. 그 理由는 파레토最適上의 效率性보다는 總體的 概念의 效率性의 概念이 法制定 및 執行 등에 있어서 보다 현실에 附合되기 때문이다.

2. 衡平性(Equity)의 概念

衡平性の 概念에 대해서는 學者에 따라 여러가지로 定義될 수 있으나, 대체로 衡平性이라 함은 “한 個人 또는 集團과 다른 個人 또는 集團간의 公正한 利益分配”를 意味한다. 따라서 法이 衡平성을 지니고 있다 함은 法の 執行으로 인하여 增加된 利益이 모든 個人 또는 集團에 公平하게 分配되는 것을 말한다.

3. 效率性和 衡平性の 關係

法の 政策的 效果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效率性和 衡平性を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



〈그림 1〉

7)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다. 그 理由는 效率性和 衡平性是 별개의 독립된 政策目標로서, 效率性과는 상관없이 衡平性を 達成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반대로 衡平性과는 상관없이 效率性を 達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

[그림 1]에서 횡축은 B의 所得을, 종축은 A의 所得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現在 A와 B의 所得의 합은 I_1 이고 A와 B의 所得은 각각 A_0 , B_0 로서 所得分配의 均衡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A_0 + B_0 = I_1$$

지금 어떤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A와 B의 所得의 합이 I_1 에서 I_2 로 增加하였다고 하자. 社會全體로 볼 때는 $I_2 - I_1$ 만큼의 所得이 增加하였으므로 I_2 상의 모든 점은 效率性條件을 充足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이 法은 效率性を 充足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와 B의 所得의 합이 增加하였다 해서 A와 B의 所得分配의 衡平性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에서 E_0 점을 보자. E_0 점에서 E_2 점으로 이동할 경우, A는 法執行 전보다 $A_0 - A_2$ 만큼의 所得增加를 야기하였으나 B는 도리어 $B_2 - B_0$ 만큼의 所得減少를 가져왔다. 따라서 E_2 점은 法 施行前에 비하여 不均等한 所得分配를 나타내는 均衡點이라 하겠다.

E_3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A는 法執行前보다 $A_3 - A_0$ 만큼의 所得增加를 가져왔으나 B는 $B - B$ 만큼의 所得減少를 가져왔으므로 E 점 역시 과거에 비하여 不均等한 所得分配를 나타내는 점이다. 즉 I_2 선상의 모든 점은 效率性的 條件을 充足시키고 있으나 반드시 衡平性を 充足시키는 것은 아니다. E_1 점은 A와 B의 所得을 모두 增加시키고 있다. A의 所得은 $A_1 - A_0$ 만큼, B의 所得은 $B_1 - B_0$ 만큼 각기 增加하였으므로 E_2 점과 E_3 점과 비교하여 볼 때 E_1 점은 相對적으로 均등한 所得分배를 나타내는 均衡점이다.

그러면 과연 E_1 , E_2 , E_3 중 衡平性を 充足시키는 점은 어떠한 것인가? E_2 , E_3 점을 E_1 점에 비하여 衡平性を 充足시키지 못한다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인가? 不均等한 所得分配가 반드시 衡平性を 充足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⁸⁾. E_0 점이 A의 所得水準이 社會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水準보다 높고, 반대로 B는 낮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均衡점의 E_0 에서 E_2 점으로의 이동은 A의 所得水準을 社會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水準으로 減少시키고, 반대로 B의 所得은 增加시키고 있으므로 E_2 점 자체는 所得의 不均等を 가져오나 衡平性を 充足시킨다고 말할

8) 이학용, 미시경제이론, p. 382 (다산출판사, 1980).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衡平性의 基準은 무엇이며, 이 基準의 選擇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는 問題가 대두된다.

衡平性의 概念을 論하는 것은 必然的으로 衡平性에 대한 主觀的 價値觀(Value Judgement)이 개입되게 되며, 이는 窮極的으로 經濟學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⁹⁾. 經濟學의 역할은 一定한 所得의 分配가 衡平性을 充足시키는가의 與否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衡平性의 基準이 이미 設定되어 있는 경우 그 基準에 의거 效率性을 充足시키는데에 있다. 效率性의 基準은 民主國家에서는 國民의 價値觀에 의해 決定되며 이는 결국 法에 의해 具體化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法과 經濟”는 經濟學으로 分析可能한 效率性 뿐만 아니라 經濟學으로 分析이 不可能한 法의 衡平性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法과 經濟는 相互補完的이 될 것이다.

III. Coase Theorem

1. 背 景

美國에서 發展되어온 “法과 經濟”理論 중 새로운 “法과 經濟”理論의 形成·發展에 가장 커다란 寄與를 한 論文 중의 하나가 Chicago大學의 Ronald H.Coase教授가 發表한 Coase Theorem이다¹⁰⁾.

Coase Theorem은 財產權(property right)의 未發達로 인하여 발생된 外部效果의 解決方案에 대하여 종래의 法學者·經濟學者들과는 다른 方向을 提示하였다¹¹⁾. 예컨대, 公害와 같은 外部效果에 대하여 종래에 提示된 解決方案은 損害賠償責任, 稅金賦課, 刑罰·行政罰의 賦課 또는 工場閉鎖·移轉 등이었으나 이러한 解決方案은 公害問題를 公장이 責任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基本前提下에 公장의 활동을 어떻게 規制하는 것이 最善인가 하는 점에 主안점을 두는 것이었다.

Coase Theorem은 이러한 問題의 解決方法을 問題의 本質을 잘못과악하고 있는

9) 형평성의 개념을 규범경제학(Normativ Economics)에서도 논할 수 있으나,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에서처럼 현실적 자료를 가지고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

10) Ronald H.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1)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44(Oct. 1960).

11) Coase Theorem에 관한 분석 및 비판에 관해서는 박세일, 코-스정리(Coase Theorem)의 법정책학적 의미, 법학 제27권 2·3호 76(1986) 참조.

것이라고 비판하고 外部效果의 相互性(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 즉 한 當事者에 대한 損害는 다른 當事者에게 利益이 되며, 반대로 한 當事者에 대한 利益은 다른 當事者에 대한 損害가 될 수 있다는 점을 指摘하였다. 따라서 外部效果에 대한 解決方案의 選擇問題는 어느 當事者에게 損害 또는 利益을 줄 것인가(Should A be allowed to harm B, or should B be allowed to harm A?)의 選擇問題라는 것이다. 이 Coase Theorem의 내용을 公害問題를 예를 들어 說明하여 보자¹²⁾.

2. Coase Theorem의 예

지금 工業廢水를 放出하는 한 공장과 廢水로 인하여 한 세대당 100만원씩의 損害를 겪고 있는 인근 부락의 住民 100세대를 假定하여 보자.

이러한 汚染으로 인한 損害에 對處하는 方法에는 <표 1>의 세가지 方法이 있다고 하자. 이 세가지 方法 중 어떠한 것이 가장 效率性이 充足시키는 方法인가? 이는 분명히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方法이다. 왜냐하면 汚染防止施設의 設置는 “汚染으로 인한 損害에 對處”라는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 가장 費用이 적게드는 方法이기 때문이다. 즉 총 1억원의 住民被害를 1,000만원으로서 除去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는 2,000만원의 수도정수기 設置費用보다 적은 費用이기 때문이다.

<표 1>

(단위 : 만원)

	方 法	費 用
1	汚染防止施設設置	1,000
2	수도정수기設置	2,000
3	損害賠償	10,000

위와 같은 結論, 즉 汚染防止施設의 設置가 가장 效率性을 充足시키는 方法이라는 結論은 淸淨한 물에 대한 權利가 누구에게 있는가 즉, 汚染除去에 必要한 費用을 누가 負擔하는가에 관한 決定과는 상관없이 成立할 수 있는가?

가. 去來費用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Zero Transaction Cost)

一般的으로 去來費用이라 함은 協議, 交渉 또는 訴訟에 있어 當事者의 確認, 會同, 協議·交渉의 節次, 裁判 또는 合意된 事項의 履行 등에 있어 必要한 費用을 말

12) 이상윤, 환경법과 경제, 법제 제347호 31(법제처 1991.8.20) 참조.

한다. 去來費用은 실제로 지출된 去來費用과 去來費用의 지출을 回避하기 위한 非效率的인 方法의 選擇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去來費用이 없다는 말은 住民들과 工場이 서로 또는 각각 汚染으로 인한 損害에 對處하는 方案을 協議하고, 交渉을 하는 過程 및 方法을 選擇하는 過程에 있어 아무런 費用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1) 工場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는 경우

우선 住民들이 淸淨한 물을 사용할 權利가 있으며, 工場이 물을 汚染시킬 경우 司法上의 損害賠償節次를 통하여 이에 대한 損害賠償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假定하여 보자. 工場은 <표 1>에서의 세가지 方法 중 하나를 選擇할 것이며, 이 중 가장 費用이 적게드는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가장 效率的인 方法 즉, 汚染防止施設의 設置와 동일한 選擇이 된다.

2) 住民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는 경우

이번에는 工場이 물을 汚染시키더라도 住民은 工場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損害賠償도 받을 수 없다고 假定하여 보자.

住民들은 3가지 方法 중 당연히 가장 費用이 적게드는 汚染防止施設을 工場에 設置하여 주는 方法을 選擇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가장 效率性을 充足시키는 方法, 즉 汚染防止施設의 設置와 동일한 選擇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工場과 住民 모두 汚染을 除去하는데 있어 가장 費用이 적게드는 汚染防止施設의 設置, 즉 가장 效率性이 있는 方法을 選擇하고 있다. 즉 누가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는가의 問題는 效率性을 充足시키는 方法의 選擇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나. 去來費用이 存在하는 경우(Positive Transaction Cost)

위의 分析은 去來費用이 없는 경우(Zero Transaction Cost)에 해당하는 分析이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 있어 去來費用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非現實的인 假定이므로 이하에서는 去來費用이 存在하는 경우의 效率性을 分析하여 보자.

<표 2>

(단위 : 만원)

方 法	費用(A)	去來費用(B)	總費用(A)+(B)
汚染防止施設 設置	1,000	0	1,000
수도정수기 設置	2,000	500	2,500
損 害 賠 償	10,000	1,000	11,000

1) 公장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는 경우

우선 公장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한다고 하자. 이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汚染防止施設의 設置, 수도정수기의 設置, 損害賠償을 하는데 드는 去來費用이 각각 0원, 500만원, 1,000만원이 所要된다고 하자. 그러면 汚染防止施設設置, 수도정수기 設置 및 損害賠償을 하는데 所要되는 總費用은 각각 1,000만원, 2,500만원, 11,000만원이 될 것이다.

公장은 당연히 總費用이 가장 적게 드는 方案 즉, 1,000만원의 費用을 들여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가장 效率的인 方法의 選擇이다.

2) 住民들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는 경우

다음에 住民들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표 3>

(단위 : 만원)

方 法	費用(A)	去來費用(B)	總費用(A)+(B)
汚染防止施設 設置	1,000	1) 500	1) 1,500
		2) 1,500	2) 2,500
수도정수기 設置	2,000	300	2,300
損 害 賠 償	10,000	2,500	12,500

이 경우 <표 3>에서 보듯이 汚染防止施設의 設置, 수도정수기의 設置, 損害賠償을 받는데 있어서의 去來費用이 각각 500만원 또는 1,500만원, 300만원, 2,500만원이 각각 所要된다고 하자. 그러면 總費用은 각각 1,500만원 또는 2,500만원, 2,300만원, 12,500만원이 될 것이다.

첫째, 汚染防止施設의 設置費用이 500만원일 경우, 住民들이 분명히 1,500만원의 費用을 들여 總費用이 가장 적게 드는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方法을 選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住民의 立場에서 볼 때는 가장 效率的인 方法일 수도 있으나 住民과 公장을 포함하여 全體的으로 볼 때에는 <표 3>에서 보듯이 公장이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할 때의 費用 1,000만원보다 500만원이 더 드는 方法으로서, 公장이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보다 非效率的인 方法의 選擇이 된다.

둘째, 汚染防止施設의 設置費用이 1,500만원일 경우, 汚染防止施設 設置의 總費用은 2,500만원이므로 住民들은 2,300만원의 費用을 들여 費用이 더 적게드는 수도정수기를 設置하는 方法을 選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公장이 汚染防止施設

설을 設置하는 경우보다 1,300만원(2,300만원-1,000만원)을 더 소비하게 되므로 非效率的인 方法의 選擇이 된다. 더구나 이 選擇은 汚染防止施設의 設置에서 수도 정수기 設置라는 方法上의 選擇을 변화시키는 效果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住民들이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게 될 경우, 이는 去來費用의 追加로 인하여 汚染除去에 있어 效率的인 方法을 상실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去來費用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던 간에 效率性を 充足시키는 方案을 選擇할 수 있었으나 去來費用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效率性を 充足시키는 方法은 누가 汚染除去費用을 負擔하여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去來費用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去來費用을 最小化 시킬 수 있는 當事者에게 汚染除去費用을 負擔시키는 것이 가장 效率性を 充足시킬 수 있는 方案에 接近시킬 수 있는 選擇이 된다.

結論的으로 볼 때 Coase Theorem은 첫째, 去來費用이 없는 경우에는 效率性的의 充足은 財產權構造(structure of property right)의 내용, 즉 權利를 누가 保有하는가의 與否와는 상관없이 항상 充足되나 둘째, 去來費用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去來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는 當事者에게 權利를 賦與하는 것이 效率性を 充足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oase Theorem은 새로운 “法과 經濟”의 理論的 土臺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主된 意義를 찾아볼 수 있으나, “衡平性”보다는 “效率性”에 중점을 두고 分析을 하였다는 점, 財產權(property right)이 存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權利를 個人에게 賦與하는 과정을 研究하였다는 점, 個人의 利益과 社會全體의 利益을 考慮하였다는 점 등에서 後術할 保守的 接近方法·進步的 接近方法·急進的 接近方法 및 古典的 自由主義接近方法의 4가지 接近方法의 基本 model을 사용하여 分析 研究할 수 있는 좋은 研究對象이라 하겠다.

IV. “法과 經濟”의 諸 方法論

한 國家에서의 “法體系”와 “經濟構造”는 양자 모두 그 存在 및 運營에 있어 國家의 構成員들간의 合法性·正統性·合理性 등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統一을 요한다¹³⁾. 예컨대,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國家構成員間은 合一된 이데올로기를 보유하고

13) Robin Paul Malloy, Law and Economics :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ory and Practice 48-57(West Publishing Co. 1990)참조.

있어야 되며, 만일 이러한 原理들을 國家構成員의 大多數가 否定한다면 이는 새로운 制度로의 變革, 즉 다른 “法體系” 및 “經濟構造”의 選擇이 될것이다. 따라서 “法과 經濟”理論의 分析은 과연 한 社會의 “法體系” 및 “經濟構造”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形成되어 있는지에 注目하여야 하며, 이는 이데올로기의 選擇이 서로 다른 “法과 經濟”理論의 形成을 意味할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下에서는 根本價値(value) 및 基本假定(assumption)을 서로 差別하는 여러가지 “法과 經濟”모델을 比較·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1. 保守的 接近方法(Conservative Approach)

Posner判事에 의하여 代表되는 保守的 接近方法(Conservative Approach)은 新古典派 經濟學모델(Neoclassical Model of Economics)을 사용하여 法의 “效率性”에 가장 커다란 主眼점을 두고 있다. 이 方法論은 “效率性”을 Kaldor-Hicks 概念의 社會의 富의 極大化(Wealth maximization)로서 前提하고 있으며, 따라서 富의 極大化를 達成할 수 있는 法은 效率的인 法으로서 評價된다. 極端的인 保守的인 接近方法에 의하면 法의 “效率性”, 즉 富의 極大化를 위하여는 法의 “衡平性”이나 法의 基本權保護側面을 희생시키는 것도 無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學者들은 奴隸制度를 否定하며 그 理由를 非道德性, 非人間性 등에서 찾고 있으나 極端的인 保守的 接近方法論者들은 이러한 근거는 모두 主觀的인 評價라고 批判하고 奴隸制度가 否定되어지는 理由는 強요된 勞動으로 인하여 奴隸로 하여금 勤勞意慾·能率을 低下시킴으로써 生産이 非效率的이라는 데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奴隸制度가 低廉한 勞動力을 供給함으로써, 奴隸制度로 인한 勤勞意慾·能率의 低下를 補償할 수 있다면 奴隸制度를 許容하는 法도 效率性を 充足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또한 平等權의 保障하에 백인 전용식당을 廢止하여 흑인을 고객으로 허용할 경우, 값비싼 음식을 選好하는 백인 顧客을 잃게 되거나 또한 유색인종이 백인 거주지역으로 이사하여 당해 지역의 地價를 下落시키는 것도 平等權의 保護라는 次元보다는 단지 效率性を 阻害시킨다는 側面에서 評價하고 있다.

2. 進步的 接近方法(Liberal Perspectives)

John Rawls, Ronald Dworkin 및 Bruce Ackerman 등에 의하여 代表되는 進

14) Richard Posner, The Economics of Justice 76(1983).

步的 接近方法(Liberal Perspective)은 法의 “衡平性”에 主안점을 두고 있으며 “衡平性”을 充足시키는 法이란 財產·資源·權力 등의 同等한 分配(equal share)를 達成할 수 있는 法을 指稱하고 있다.

極端的인 進步的 接近方法에 의하면 憲法·法律에 의하여 保障되고 있는 基本權(natural right, inalienable right)의 存在는 既存 既得權者의 財產的 權利(property right)를 비롯한 각종 既得權을 社會改革(social reform)이나 非自發的인 富의 移轉(involuntary wealth transfers)으로부터 防止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라는 것이다¹⁵⁾. 따라서 基本權의 概念은 同等한 待遇(equal treatment)를 바탕으로 한 “衡平性”의 概念으로 代替되어야 하며, 이는 國民에 의하여 選출된 進步的 政治家(liberal statesman)에 의하여 政治的 過程(political process)를 통하여 達成될 수 있다고 한다. 進步的 接近方法은 “法과 經濟”의 理論 展開에 있어 基本權의 保護라는 側面을 看過하고 있다는 점에서 保守的 接近方法과 類似하나, 前者는 法의 “衡平性”, 後者는 法의 “效率性”에 主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3. 急進的 接近方法(Left Communitarian Approach)

Binder, Fruman 등에 의하여 代表되는 急進的 接近方法(Left Communitarian Approach)은 既存의 法體系가 個人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批判하면서 法體系의 集團的 側面, 社會主義的 側面을 強調하고 있다. 즉, 한 社會의 法體系는 不確定的(indeterminancy)·條件的(contingency)인 것으로서 一定한 이데올로기에 그 基盤을 두고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全體的인 法體系가 決定되는 바, 既存 法體系는 個人主義的 이데올로기를 反映하여 形成되어 있으므로 結果的으로 個人主義的 이데올로기를 防禦·維持하는 機能을 擔當하고 있어 集團主義的·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가 反映될 수 있도록 既存 法體系를 急進的으로 改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契約自由의 原則을 예로들어 說明하여 보자. 保守的 接近方法에 의하면 우선 自由競爭市場을 假定하고 契約의 양 當事者가 自由意思에 기하여 契約을 맺으며, 당해 契約이 社會全體의 效率性を 增加시킬 수 있는지의 與否에 重點을 두는데 반하여 急進的 接近方法은 契約當事者, 특히 教育水準·雇傭狀態·理解能力·社會的 地

15) B.Ackerman,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1980).

16) Turley, The Hichhiker's Guide to CLS, Understand Deep Thought, 81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539-95(1987).

位 등이 낮은 當事者와 높은 當事者간에 正當한 契約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急進的 接近方法은 個人主義·市場經濟 등을 否定한다는 側面에서 保守的 接近方法과는 根本的으로 그 體系를 달리하며 또한 進步的 接近方法이 社會의 根本 矛盾에 대한 漸進的 解決策을 提示함으로써 社會的 根本矛盾에 대한 관심을 稀釋시켜 問題를 획기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必要性 및 그 기회를 剝奪한다고 批判을 가하고 있다.

4. 古典的 自由主義接近方法(Classical Liberal Theory)

아담 스미스·헤이에크·프리드만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古典的 自由主義接近方法(Classical Liberal Theory)은 “國民의 基本權”(natural and inalienable right) 보호라는 側面에 “法과 經濟” 理論研究의 가장 큰 比重을 두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個人利益과 社會利益간의 調和를 許容하고 있다. 古典的 自由主義下에서는 “國民의 基本權”問題는 궁극적으로 規範的 分析을 요하는 道德的 問題로서 保守的 接近方法이 추구하는 “效率性”의 問題 즉 社會富의 極大化 問題와는 次元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效率性”의 問題는 基本權을 保障하는 하나의 方法論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窮極的인 目的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¹⁷⁾.

따라서 資本主義 및 市場經濟原理는 基本權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方法 중 最適의 方法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 “法과 經濟”가 추구하는 基本 目標 내지 原理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古典的 自由主義接近方法은 基本權의 追求를 “法과 經濟”의 最大目標로 設定한다는 점에서 앞의 세가지 모델과 그 樣相을 달리 하나 市場經濟에 바탕을 둔 效率性의 추구 및 國家干涉을 許容한다는 점에서 保守的 接近方法과 進步的 接近方法과 각각 공통점을 지니며, 市場經濟·資本主義 체제가 基本權의 保障에 가장 適合하다는 評價를 내린다는 점에서는 急進的 接近方法과 다르다 할 것이다.

V. 各國의 “法과 經濟” 動向

1. 背景

美國에서 시작된 “法과 經濟”에 대한 研究는 프랑스·동유럽·아프리카·남미 등

17) Malloy, Invisible Hand or Sleight of Hand? Adam Smith, Richard Posner,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36 Kansas Law Review 209, 255-257 (1988).

을 除外한 世界主要 各國에서 그 理論的 研究 및 實際的 適用에 관한 分析이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¹⁸⁾.

특히, 서유럽과 日本에서는 “法과 經濟”에 대한 研究가 相當히 오랜 기간동안 폭 넓게 進行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대만·싱가포르 등도 “法과 經濟”理論이 定着되기 시작하는 段階에 있다. “法과 經濟”理論을 導入·發展시킨 國家들이 거의 대부분 大陸法體系下的 國家들이므로 以下에서는 우선 英美法下的 “法과 經濟”理論을 大陸法體系下的 國家에 接木시킬 수 있는지의 與否를 검토한 후 이들 國家 중 “法과 經濟”理論의 研究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주요 몇개국의 “法과 經濟”研究動向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번째 問題는 英美法體系下에서 發展된 “法과 經濟”의 理論을 大陸法體系 國家의 法的 構造에 接木할 수 있는가의 問題이다. “法과 經濟”理論의 가장 重要한 考慮對象 중의 하나는 法院에 보다 效率的인 紛爭解決方案을 提示함으로써, 裁判決定(decision making of the court)에 관한 法院의 能力·役割을 提高하는데 있다. 따라서 과연 法院이 裁判過程에 있어 “法과 經濟”理論을 導入·適用할 수 있는 權限 또는 裁量を 보유하고 있는지의 與否는 “法과 經濟”理論을 大陸法體系下的 國家가 導入 發展시킬 수 있는지의 與否를 판단할 수 있는 本質的인 要素라고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英美法體系下에서의 法院의 역할은 不文法下에서의 先例의 原則(principle of precedent)에 따라 當該 事件에 각각 適合한 規範(proper rule)을 決定하는 것임에 반하여 大陸法體系下에서의 法院의 役割은 成文法으로 이미 規定되어있는 法規를 단순히 解釋·適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法과 經濟”理論의 주된 觀點이 法院의 效率的인 法規制定에 기여하는데 있고, 또한 大陸法體系下에서의 法院이 法規制定에 관한 아무런 裁量權없이 成文法典의 機械的인 解釋 및 適用을 本質的 임무로 하고 있다면, “法과 經濟”理論의 大陸法體系國家로의 導入은 그 意味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觀點은 다음의 두가지 側面에서 비판되어 질 수 있다.

첫째는, 大陸法體系下에서의 法院도 英美法體系下에서의 法院과 마찬가지로 實質

18) 1970년 8월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Economic Analysis in Civil Law Countries : Past, Present, Future”를 주제로 하여 유럽법과 경제학회(European Law and Economic Association)에 의하여 개최된 심포지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19) Christian Kirchner, The Difficult Reception of Law and Economics in Germany, 11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77, 283(1991).

的으로 法을 創出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독일에서의 生産者責任(Product Liability), 프랑스의 不法妨害(Nuisance) 등은 그 代表的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國家의 大法院判例는 政策的 判斷(policy consideration)을 요구하는 決定이 相當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大陸法體系國家의 法院이 法規創出에 전혀 干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法과 經濟”는 이들 國家의 立法부의 法制定에 주요한 方法論을 提示할 수 있다는 점이다. “法과 經濟”의 주된 관심이 “法規制定機關”보다는 “法規制定役割”에 주어져 있다면 立法부가 法을 制定하는데 있어서의 “法과 經濟”의 導入은 상당히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할 것이다.

두번째 問題로는 大陸法體系國家,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發展되어온 “概念主義(conceptualist)” 또는 “形式主義(formalism)” 法理論 中心의 法體系가 “法과 經濟”理論을 受容할 수 있는지의 與否이다. “概念主義” 또는 “形式主義” 法理論體系는 적은 숫자의 大前提(preposition) 또는 定義(definition)로부터 많은 法規範을 演繹的·理論的으로 導出하여 왔다. 따라서 “法과 經濟”가 한 國家 또는 社會가 指向하는 法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하고자 하는 實踐的·經驗的 理論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概念主義” 또는 “形式主義”法體系下的 國家는 “法과 經濟”理論을 쉽게 受容할 수 없을 뿐더러, 受容한다 할지라도 法理論의 한 分野로서보다는 기존의 法理論을 補完하는 하나의 方法論으로서만 受容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英美法體系下에서는 20C초반부터 순수한 “概念主義” 法理論體系는 점차 止揚되어 實踐的이고 現實的인 法論理가 定立되기 시작하였는 바, 이의 代表的인 사례가 “法과 經濟”理論의 導入이며, 美國에서는 “法과 經濟”理論의 導入이 기존의 傳統的인 英美法體系는 물론 現在의 法學教育 및 學問에 커다란 影響을 끼치고 있다. 大陸法體系下的 國家, 특히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概念主義”法體系가 主流를 이루고 있으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法形式 自體보다는 法目的에 비중을 두는 경향하에 “法과 經濟”理論의 導入이 相當히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때에 英美法體系下에서 發展되어온 “法과 經濟”를 大陸法體系下的 國家들이 導入·發展하는 경우 양 體系의 차이점에서 導出되는 問題점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主要國들의 “法과 經濟” 研究動向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0) Ugo Mattei and Roberto Pardoleis, 11 Internation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65 (1991)참조.

2. 各國의 “法과 經濟”

가. 독 일

독일에서는 大陸法體系國家 中에서도 “概念主義” 또는 “形式主義” 法學이 가장 두드러진 性向을 보이고 있어 “法과 經濟”理論이 실제로 立法 또는 裁判過程에 미친 影響을 消極적으로 評價하고 있으나, “法과 經濟”理論의 研究水準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相當히 높은 편이다²¹⁾.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以後부터 法學과 經濟學理論의 接木을 試圖하여 왔으며, 이는 전후 독일 經濟政策에 지대한 影響을 미친 소위 修正資本主義(Ordoliberalismus)라 불리는 經濟的 接近方法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는 바, 주로 獨占禁止法·契約法·企業法 등의 分野에서 法的 經濟的 分析을 試圖하였다. 英美法體系 下에서 發展되어온 새로운 概念의 “法과 經濟”理論은 1970년대에 美國 Posner 判事가 저술한 “法的 經濟的 分析”(Economic Analysis of Law)을 시발점으로 하여 導入되기 시작하였으며, 現在는 法學者들이 다양한 分野에서 經濟的 分析을 試圖하고 있다.

또한 The Yearbook for New Political Economy(The Jahrbuch fur Neue Politische Okonomie), The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등 많은 주요 論文誌들이 “法과 經濟”理論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學術적으로도 相當히 活潑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고, Hamburg·Bremen 등 主要 大學에서도 正規學科目으로 “法과 經濟”가 採擇되어 있으나, “法과 經濟”를 전담하는 研究機關은 아직 設립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다.

나. 일 본

日本の 경우 日本 法學制度의 硬直性, 文化의 排他性 등으로 인하여 “法과 經濟”가 既存 法學의 고유한 한 分野로서 아직 定着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學問的 研究는 相當히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²²⁾. 1968년 Calabresi의 “法과 經濟”理論을 序頭로²³⁾ Posner의 理論, Coase Theorem 등이 紹介되었고, 契約法(Contract)·物權法(Property)·

21) Christian Kirchner, The Difficult Reception of Law and Economics in German, 11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77(1991) 참조.

22) Schozo Ota, Law and Economics in Japan : Hatching Stage, 11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01(1991)참고.

23) Koichiro Fujikura, “Fuhokoi-Sekinim no Tenkai(Development in Tort : A theory of Liability Imputation),” 107 Doshisha-hogaku 1(1968).

民事訴訟法(Civil Procedure) 및 刑法(Criminal Law) 등의 分野에서 “法과 經濟” 理論이 점차 研究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研究는 法學者와 經濟學者가 環境汚染防止·消費者保護·交通事故防止·生産者責任 및 醫療不法行爲(medical malpractice) 등의 分野에서 共助하여 研究되기도 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J.M Oliver의 “Law and Economics”, A.M Polinsky의 “An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N. Mercurio 및 T.P Ryan의 “Law, Economics and Public Policy”, R.D Cooter 및 T.S Ulen의 “Law and Economics”, G.Calabresi의 “Ideals, Beliefs, Atitudes, and the Law” 및 R.A Posner의 “The Economics of Justice”가 번역되어 紹介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美國의 “法과 經濟”理論의 導入이 進行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日本 自體에서도 Koichi Hamada의 不法行爲分析²⁴⁾을 序頭로하여 많은 法學者·學者들이 既存의 判例를 分析하였을 뿐 아니라, 企業法(Corporation)·契約法(Contract)·交通關係法(Traffic Accident) 등 다양한 分野에서 獨創적인 “法과 經濟” model이 提示되고 있다.

다. E C

EC에서는 새로운 EC法規가 制定됨에 따라 이 새로운 法規가 각 회원국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諸分野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法과 經濟”의 分析이 研究되었다²⁵⁾.

EC에서의 “法과 經濟”의 研究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制約을 안고 있다.

첫째, EC가 로마協約(Treaty of Rome)에 의하여 부여받은 權限의 範圍가 傳統적인 “法과 經濟”의 研究對象範圍와 一致하지 아니하여 “法과 經濟”의 理論이 援用될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둘째, EC議會의 立法段階에 있어 회원국간의 經濟的 利害關係가 一致하지 아니하므로 가장 效率적인 經濟的·法的 結果를 도출하기 용이하지 아니하여 “法과 經濟”의 原理를 適用할 適合한 目標設定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EC執行委員會(Commission)는 農業政策·貨幣政策·關稅政策 등 EC統合과 관련된 法規에 관하여 費用便益分析 등 수많은 經濟的 分析을 試圖하였고 이러한 試圖는 全般的으로 EC의 獨自적인 “法과 經濟”研

24) K. Hamda, “Liability Rules and Income Distribution in Product Liability”, 66 American Economic Review(1976).

25) Gerard Hertig, The European Community, 11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31(1991).

究霧圍氣를 造成·發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經濟的 分析은 巨視經濟모델(Macroeconomics Model)을 사용하고 있는 바, 傳統的인 “法과 經濟”가 대부분 微視經濟的分析(Microeconomics Model)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때, EC의 “法과 經濟”가 傳統的인 “法과 經濟”의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으나, 商品·用役·貨幣·環境·消費 등分野에서 微視經濟的 技法을 사용한 分析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市場競爭政策(competition policy)이 EC政策의 근간이 되고 있어 EC執行委員會에 의하여 選任된 專門家들에 의하여 각종 EC政策 및 法規가 競爭原理에 適合하도록 規定되어 있는지 與否의 分析이 試圖되고 있다.

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大陸法體系國家 중에서 法學者들에 의하여 가장 活潑하게 “法과 經濟”의 研究가 進行되고 있는 國家 중의 하나이다²⁶⁾. 美國에서 1960년초에 Coase교수에 의하여 現代 “法과 經濟”가 비롯되었듯이 이탈리아에서도 1960년초 Trimarchi교수에 의하여 獨自的인 “法과 經濟” 理論이 發表되었다²⁷⁾.

이 研究는 不法行爲, 過失 및 無過失 등 美國의 “法과 經濟” 研究와 그 主題 및 方法에 있어서 相當히 흡사한 側面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生活妨害(nuisance)의 分析에 있어서는 外部效果(externality)의 存在 및 相互性(receprocity)의 研究라는 側面에서 美國의 Coase Theorem의 分析과 相當히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背景下에 1970년대 以後 이탈리아에서는 “法과 經濟”理論에 대한 研究가 學問的으로 相當히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으며 또한 教育과정에도 폭넓게 反映되어 유럽 등 大陸法體系國家 중에서는 가장 活潑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는 國家 중의 하나이다.

VI. 結：우리나라의 “法과 經濟” 診斷 및 向後課題

우리나라에서의 “法과 經濟”의 研究는 美國에서 發展된 “法과 經濟” 理論의 導入·紹介 段階라 하겠다. 물론 1960년대 以後 經濟成長政策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26) Ugo Mattei 및 Roberto Pardolesi, Law and Economics in Civil law Counties : A Comparative Approach, 11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1991).

27) Rischio e Responsabilita off ettiva(1961).

關係法令, 政策 등이 經濟學的으로 檢討·分析되어온 사례는 있으나 이는 樹立된 經濟政策의 立法에의 事後的 反映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法과 經濟”原理는 1980년대 후반부터 本格的으로 導入되기 시작 하였으나 아직도 對象分野 및 方法論에 있어 國內에 充分히 紹介되어 있지않은 상태이며 더군다나 “法과 經濟”의 原理를 國內 實定法에 適用시켜 分析한 學術의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教育課程으로는 國內大學 중에서 서울大學校만이 유일하게 學部 및 大學院課程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實情이다. 法이 國家運營의 基本組織 및 國家政策의 最終的 反映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重要한 國家 基本政策 중의 하나가 經濟政策임을 감안하여 볼 때 “法과 經濟”에 관한 研究가 다른 國家에 비하여 活潑히 進行되고 있지 못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法과 經濟” 研究에 適合한 學者의 不足이다. 이러한 不足 현상은 “法과 經濟”가 美國에서 發展되어온 역사가 짧을 뿐더러 國內에 紹介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어서 “法과 經濟”理論을 充分히 研究할 시간이 不足한 理由도 있겠으나 더 큰 問題는 學問間的 交流不足에 있다 할 것이다. 外國의 경우를 보게되면 法學을 經濟學·社會學·政治學·心理學·行政學·哲學·歷史學·醫學·컴퓨터學 등 隣接學問과의 連繫下에 分析하는 研究가 상당히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複合的 學問研究(interdisciplinary study)가 드물고, 또한 學位課程에 있어서도 各 大學間的 협조하에 複合的인 學問을 研究하여 共同學位(joint degree)를 취득하는 과정도 없는 實情이다.

둘째, “法과 經濟”에 관한 무관심이다. 現在 우리나라 法科大學의 敎科課程은 考試科目 爲主로 편성되어 있고, 考試科目 外的 科目은 講義된다 할지라도 대개 必須科目이 아닌 選擇科目으로 되어있는 實情이다.

셋째, 法學研究方法論에 있어 “概念主義” 또는 “形式主義”法學에 중점을 두어 法規의 諸規定이 一定한 法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되도록 規定되어 있는지 與否에 관한 事項을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法과 經濟”理論을 定着·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 敎科科目을 考試科目 위주로 편성하는 것의 緩和, “法과 經濟”科目의 設置 擴大, “法과 經濟” 關聯 學者·專門家の 養成, “法과 經濟” 全擔 研究所의 設立 등을 檢討하는 한편, 長期的으로는 法學研究의 方向을 “概念主義” 法學에서 보다 法目的 指向的인 法學으로의 전환을 試圖해 보는것이 必要할 것으로 본다.

20世紀들어 國民들의 생활이 점차 다양화·복잡화 되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既存의 法學敎育이나 研究의 方向은 새로운 法學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法과 經濟”에 관한 研究도 이러한 側面에서 파악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法과 經濟”의 研究範圍도 經濟와 관련된 分野는 물론이거니와 環境·勞使問題·刑事政策 등 現代社會의 넓은 分野에 걸쳐 있으므로 이의 重要性이 強調된다 할 것이다.